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모집 공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전문기관과 수출초보기업 간 지역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공동 개척 및 수출 촉진을 뒷받침하는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진출 지원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별기업 한계 극복 및 신규시장 개척 도모
- 사업기간 : 선정 후 ~ '26.12
- 사업규모 : 총 13개 내외
- 사업내용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 지역별 특화업종을 지정하여, 수출전문기관과 지역특화 해외 공동진출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분	주요 내용
공모형	• 지방청이 지역별 유망업종 발굴하여 프로그램 운영
테마형	•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Top-down 방식으로 해당연도 중점 지원분야 선정 - ('26년 테마) 중동전쟁 피해·애로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

- 수출전문기관은 참여기업(수출초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계획 수립과 바이어 발굴 등 추진

-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공동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개별기업 필요사항은 타 수출 지원사업 우대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업종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프로그램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1단계, 사전준비) 바이어 사전 발굴, 해외마케팅 및 홍보
 - (2단계, 현지파견)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참가
 - (3단계, 사후관리)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 * 세부 지원항목은 [참고2] 「지역 수출컨소시엄 세부 지원 기준」 참조
 - ** 각각의 컨소시엄은 '현지파견' 단계를 포함하여 1·2단계는 필수 진행
- 지원방식 : 수출전문기관 총사업비 중 90%를 선지급하며 사업 종료 이후 수출전문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후정산
 - 적격 증빙 지출금액에 한해 최종 정산하며, 미집행액은 반납 조치
- 연계지원 : 수출성과 달성 기업(수출계약 체결)은 아래와 같이 차년도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 지역 수출컨소시엄 연계지원 내용 (안) >

구분	지원내용	지원사업	비고
연계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 우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가점 2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입주, 특화프로그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가점 5점

3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수출전문기관) 해외시장 공동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유통·마케팅 기업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수출유관기관 등 (소재지 무관)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 ①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② 한국평가데이터(주)의 기업 신용정보상,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법정관리·기업 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③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④ 휴·폐업중인 경우
-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참고)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기준(안)

- *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최소 10개사 이상으로 구성(10개사 미만인 경우 관리기관 승인 必)
- * 참여기업은 지방청과 수출전문기관이 함께 공모·선정 (「수출컨소시엄 사업 운영지침」 내 참여기업 평가표 준용)

□ 신청방법

- 신청 서류를 관할 지방청 접수처에 메일로 제출
 - * 2개 이상의 지방청 연계하여 진행 시, 대표 지방청 1개에 제출
- 신청기간 : 2026. 7. 3.(금) ~ 2026. 7. 16.(목) 18:00까지

○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korea.kr)	주 소
서울지방청	채동준	02)2110-6334	chaedj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청	최진희	051)601-5165	amirah2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벅스코 2전시관 3층 371호 수출지원센터
대구·경북지방청	박정민	053)659-2245	min4567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청	임성아	062)360-9192	ahsung4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제주수출지원센터	강성희	064)753-8757	dlswlksh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기지방청	김정욱	031)201-6945	kjw76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영통동)
경기북부사무소	김택수	031)820-9033	kts1976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한지연	032)450-1132	hanjiyeon1516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1층 지역정책과
대전·세종지방청	이종택	042)865-6151	leejay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청	안아영	052)210-0063	aay1008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강원지방청	김정미	033)260-1675	jmkim1121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퇴계동)
충남지방청	최상희	041)415-0605	shchoi96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충북지방청	신지식	043)230-5327	yuguansun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정리)
전북지방청	성희준	063)210-6485	shj1713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경남지방청	이지은	055)268-2565	zeonyi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신월동)

□ 제출서류

구분	연번	신청서류	비 고
필수 (공통)	1	사업신청서	[붙임1] 직인 후 스캔 * 예산세부내역은 별도 파일로 첨부
	2	사업계획서	[붙임2]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붙임3] 서명 후 스캔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 30일 이내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일 30일 이내
선택 (해당시)	8	신청전시회의 최근 3년('23년~'25년) 전시 규모 등 개최 결과* 증빙 * 총 참관객(바이어 포함), 참가업체 수는 반드시 표기	주최측 브로셔 또는 홈페이지 화면캡처(주소 명기) * '25년 자료 미공개시, 직전자료로 대체
	9	최근 국고지원 해외마케팅 사업실적증명서	사본 * 코트라 실적증명서 제외
	10	참가전시회/상담회 정보(Review) 작성자료	해외전시포털 등록화면 캡처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붙임 4, 5는 수출전문기관 선정 이후 작성

□ 유의사항

-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추후 사업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제출기한 미준수 등은 사업선정 평가에서 제외
- ◆ 신청시 작성한 서류나 제출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오류, 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신청 수출전문기관에 있음
-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4

평가방법 및 선정

□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단계별 사업계획, 전략성, 수출전문기관 운영능력 등 평가
- (평가방법) 지방청·본부 단계별 평가
 - (1단계) 각 지방청에서 결격사유 등 1차 평가 실시하여 우선순위 추천
 - (2단계) 예산 규모,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우대사항) 지방정부 공동 기획과제*는 2단계 평가점수 60점 이상 시 자동으로 선정

* 지방정부와 함께 기업 모집, 예산집행 등 수행

** 예산 규모에 따라 지방정부 공동 기획과제이더라도 미선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지방정부와 공동 기획과제로 추진하더라도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내역이 적발될 경우 수출컨소시엄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반환 및 회수

* 지방정부, 타 부처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 시 선정에서 제외

□ 추진일정

※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동가능

구 분	기 간
신청 및 접수	7. 3.(금) ~ 7. 16.(목)
1차 평가	7. 17.(금) ~ 7. 23.(목)
최종 평가	7. 24.(금) ~ 7. 30.(목)
수출전문기관 선정	7. 31.(금)
사업 운영	8월~12월

5

추진절차 및 문의처

□ 프로그램 추진절차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출전문기관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수출컨소시엄 모집 공고 	중기부 본부
↓		
접수·1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접수 및 1차 평가 진행하여 우선순위 추천 * 신청 전 지방청 사전협의 필수 	지방청
↓		
최종 평가·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평가 및 수출전문기관 선정 	중기부 본부
↓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체결 * 최종 선정 수출전문기관 해외전시포털에 정보 등록 필수 	중기 중앙회
↓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지방청, 수출전문 기관
↓		
결과보고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결과 보고, 관련 비용정산 등 	중기 중앙회

□ 지역 수출컨소시엄 신청 문의처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처에 문의

붙임 1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신청서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가 신청서

1. 지역컨소시엄

I. 기초사항	관할 지방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모형		<input type="checkbox"/> 테마형		
	현지활동	<input type="checkbox"/> 해외전시회		<input type="checkbox"/> 수출상담회		
	수출전문 기관명			대표자명		
II. 사업개요	사업명	* (전시회/상담회) 개최년도+ 국가명+ 도시명+ 품목+ 사업명 ex. 2026 독일 뮌헨 국제스포츠용품 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단계별 추진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 2개 이상 지역파견 시 지역별 일정명기		
	파견지역	* 국가 및 도시명 기재				
	참여기업	개사	총면적(전시회)	sqm	홍보부스면적(전시회)	sqm
	대표품목	(HS code :)				
	지방정부 연계	<input type="checkbox"/> 여 (ex. □□도 ○○시)		<input type="checkbox"/> 부		
	특이사항	* 2개 이상 사업신청 시 선정우선순위 및 수출전문기관 지원사항 등 기재				
	현지수행사	수행사명			대표자명	
III. 예산계획		1단계(천원)	2단계(천원)	3단계(천원)	구성운영(천원)	총 액(천원)
	국고지원액					
	기업부담 등					
	합 계					
IV. 중복지원	동 사업으로 타 정부기관, 지자체 예산지원 신청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 예산작성 기준 환율 : 달러(USD) 1,400원, 유로(EUR) 1,600원, 엔(JPY) 900원, 위안(CNY) 200원, 파운드(£) : 1,900원, 싱가포르(\$) 1,100원 기준으로 작성						

『○○○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계획서

* 사업명 작성원칙 : 개최년도 + 국가명+ 도시명 + 품목 + 사업명
 (ex. 2026 독일 뮌헨 국제스포츠용품 상담회)

1. 지역 수출컨소시엄 개요

사업명 :

추진기간 :

- (1단계) 2026. 00. 00 ~ 00.00 (00일간)
- (2단계) 2026. 00. 00 ~ 00.00 (00일간)
- (3단계) 2026. 00. 00 ~ 00.00 (00일간)

타겟시장 : * 국가 및 도시명 기재

참여기업 : 00개사

참여품목 : 00품목, 00품목

총 예산 : 00천원 (정부보조 00천원, 기업부담 00천원)

성과목표 설정

	목표치	비고 (목표설정 근거 등)
상담액	건, 달러(US)	
현장 계약액	건, 달러(US)	
1년내 예상계약액	건, 달러(US)	

□ 추진일정

단계	기간/일자	내 용	비고
1단계		참가업체 모집	
		바이어 발굴 및 수출컨설팅	
		현지홍보 등	
2단계		현지 운영 *지역별	
		현지 운영 *지역별	
종료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기타 특이사항 :

2. 단계별 운영계획

가) 1단계 (사전준비단계)

□ 목표시장 진출전략

- * 전년도 분석, 목표시장 특성 및 선정 이유
- * 품목 전략(주요 구성품목의 세계시장 규모 및 국내 수출규모 통계 등)
- * 품목 경쟁요소 분석(가격, 기술, 품질, 마케팅, 유통) 및 주요경쟁국 분석

□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중소기업확인서 必)
- * 참여기업 모집, 선정(기업 참가비 계획, 선정 시 시장성 평가 반영여부 등)
- * 업체교육 및 업체수요 반영계획(진행계획 안내, 상담스킬, 상담장·부스연출기법 교육, 부스배정, 협력업체 선정 등)

□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 * 바이어 발굴전략,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 현지 홍보

- * 마케팅 전략(홍보물, 현지광고 등),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포함

나) 2단계(현지파견 단계)

활동 개요

○ 개최 일자 :

○ 개최 장소 : *상세지역, 전시장명(호텔명)

○ 전시회(상담회)명 :

- 상담장 계획

	기본 면적 (sqm)	업체수	총 면적 (sqf,sqm)	업체부스	홍보부스
				(sqm)	(sqm)
신청 수출전문기관					
타 정부기관, 지자체					
개별 참가					

전시부스·상담장 등 운영 *해당 내용만 참고

* 전년도 분석(상담장 도면, 상담장 사진 등) *해당 시

* 금년도 개선방안(상담장 구성, 업체수요 반영방안) *해당 시

* 상담장 디자인연출, 제품디스플레이 방안 등

* 사전예약·임차 여부, 임차료 지급여부, 임차방법(개별기업 임차, 수출전문기관 일괄임차)

현지 파견일정 *일자별 작성

일 자	국가, 지역	주요 내용	비고

다) 3단계(사후관리단계)

바이어 초청계획

* 일정, 운영방식 등

바이어 관리 및 참여기업 성과관리

* 바이어 데이터 관리계획 등

3. 수출전문기관 운영 계획

참여기업 지원방안

- * 수출전문기관 역할 분석, 차별화된 참여 중소기업 지원방안
- * (상담회) 공동마케팅 활동 개선방안
- * 바이어 데이터 관리 및 최신성 유지 방안
- * 수출전문기관 역량강화 계획
- * 수출전문기관 해외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

현지 수행사 현황

* 2개 이상의 수행사가 있는 경우 모든 수행사 현황을 작성

수행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명)	(전화)	(이메일)		
구분	<input type="checkbox"/> 코트라 <input type="checkbox"/> 해외민간네트워크 <input type="checkbox"/> 전문무역상사 <input type="checkbox"/> 업종별 협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증보유사				
관련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기간	참가국, 지역	참가 업체수	주관기관 (지원기관)

※ 해외민간네트워크, 전문무역상사 등의 인증·허가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 정부기관 또는 현지국가의 업종단체를 현지수행기관으로 할 경우 사업추진부서 현황 및 마케팅 지원실적 작성 불필요

○ 수행사 인력현황 * 조직도 본문 삽입 또는 별첨

성명	부서(직급)	경력연수	주요경력	관련 자격증

4. 지방정부 연계 계획

(신청서 中 지방정부 연계 '여' 표시한 경우, 상세 내용 기재)

5. 정부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수출컨소시엄』 사업계획서(요약)

*전시회만 해당

I. 전시회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명 : ○ 개최기간 및 장소 : ○ 면적 : ○ 품목 : ○ 전시회 규모 : ○ 특이사항 : 	
II. 운영계획	1단계(사전준비)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 현지 바이어 발굴 ○ 현지 홍보
	2단계(현지파견)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 위치 및 구성 ○ 부스 디자인 및 제품 디스플레이 ○ 제품 운송 계획
	3단계(사후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초청 일정 ○ 참여업체 방문 또는 상담장 임차 계획
	4단계(구성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부스 역할(통역원 역할 포함) ○ 수출전문기관 담당자 출장 계획

기업 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귀하

귀 회사의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귀 회가 본인의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라 함은 지역 수출컨소시엄 신청·계획수립·참여기업모집·사업관련 정보수집·정보제공·예산교부·사업수행·결과보고·사후관리 등의 업무와 동 사업과 관련한 부수업무(금융정보, 신용정보, 신용조회, 요청자료 작성 등)와 관련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필수/선택)	<p>[필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으로서 사업 수행의 설정·유지·이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관세청에서 통관자료 등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단, 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지역 수출컨소시엄 제도변경 통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 처리 <p>[선 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출컨소시엄의 홍보, 조사와 본회 사업의 홍보·조사·가입 및 이용·판매 권유 등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국적·직업·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기업식별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 (단, 활용 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정) :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p>※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이용 기간	<p>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역 컨소시엄 사업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본회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사업참여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수집·보유·이용됩니다.)</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으로서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출컨소시엄 참여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수출컨소시엄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 동의여부(필수/선택)	<p>[필 수]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선 택]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동의 여부(필수)	<p>[필 수]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표준협약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검토기관” 이라 한다),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_____ (단체명) (이하 “수출전문기관” 이라 한다)는 2026년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_____ (사업명) _____ (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 “수출전문기관” 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 “수출전문기관” 은 본 협약을 체결 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협약기간)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 “수출전문기관” 간의 협약 기간은 수출 전문기관 선정일로부터 사후정산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시행) ① “수출전문기관” 는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과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② “수출전문기관” 은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에 협의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참여기업의 성과제고 및 국위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은 “수출전문기관” 이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도록 지원 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여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수출전문기관” 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출전문기관” 은 정부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사업관련 홍보제작물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CI를 표기한다.

⑤ 참여기업은 신의성실로 사업을 수행하며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 “수출전문기관” 의 사업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제5조 (사업비 조성 및 보조금 교부)** ①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참여기업 및 “수출전문기관”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하되,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 ②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은 수출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출전문기관” 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검토, 조정하여 보조금을 수출전문기관에 교부한다.
- ③ “수출전문기관” 은 국고 보조금과 참여기업의 부담금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 ④ “수출전문기관” 은 참여기업 부담금 산정내역을 사전에 참여기업에 문서(서면, 이메일 등)로 교부하고 관리기관의 사후정산이 확정된 이후 정산결과 교부해야 한다.
- ⑤ “수출전문기관” 은 “참여기업에게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 제6조 (이행보증보험)** ①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은 “수출전문기관” 의 세부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대해 승인한 후, 지원금의 교부를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시, 보증기호는 정부지원금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사업 수행기간에 4개월을 가산한다.
- ③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미발행·오발행을 사유로 “수출전문기관” 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연·거부할 수 있다.

- 제7조 (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 ①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은 “수출전문기관” 으로부터 완비된 정산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전문기관” 에 통보한다.
- ②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이자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 “수출전문기관” 에 10일 이내에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은 지원금 교부 제외 사유발생 또는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수출전문기관” 은 “관리기관” 과 “검토기관” 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환수 요청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지원금의 반환을 완료해야 한다.
- ⑤ “수출전문기관” 이 참여업체 모집실패 등으로 사업을 취소,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교부금 전액 및 이자 발생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임차비 등 기집행된 자금의 처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손해배상) 계약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손해는 타방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10조 (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 및 재판의 관할은 “관리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수출전문기관”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수출전문기관”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수출전문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지역 수출컨소시엄명)

○ (수출전문기관) _____ (대표자) (인)

○ (검토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 장) (인)

○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인)

청렴·윤리경영실천서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렴·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당해 사업에의 참여가 중소기업 고객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직무를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고객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중소기업 고객 및 직무관련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수출전문기관명)

(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참고 1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평가 기준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평가표(해외전시회)

구 분	하위항목	배점	평가구분					계	
			A	B	C	D	E		
1. 전시회 수준 (최근 오프라인 전시회 및 주최사 증빙기준)	① 바이어 수	10	5만명 이상	4만명 이상	3만명 이상	2만명 이상	2만명 미만	45	
			5	4	3	2	1		
	② 전시회별 자체평가	10	- 전시규모	8만㎡ 이상	8만㎡미만-4만㎡이상	4만㎡미만-2만㎡이상	2만㎡ 미만		10
			- 참가기업 수요조사	50개사 이상	20개사 초과~30개사 이상	15개사 초과~20개사 이상	10개사 초과~15개사 이상		
	③ 전시회 경쟁력 및 차별성 등	1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2. 수출전문기관 운영능력	①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2023~2025년 지원사업 실적	5	10회 이상	8~9회	6~7회	4~5회	3회 이하	30	
			5	4	3	2	1		
	② 수출전문기관 성과평가	25	상위10% 이내	상위20% 이내	상위30% 이내	상위40% 이내	상위40% 초과		
			25	22	19	16	13		
3. 운영계획 충실성 (계획서 평가)	① 참여기업 모집 및 사업운영 계획 - 기업모집 적정성, 단계별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1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5	
			10	8	6	4	2		
	② 마케팅 전략 - 목적·방법·예산 적절성, 기대효과, 참신성, 이행가능성 등	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③ 한국관 구성 및 운영계획 - 부스 디자인 및 위치, 현지수행사 선정여부, 연차별 운영계획 등	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④ 사후관리계획 등 - 바이어 초청계획, 참여기업 성과관리 방안 등	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4.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 공동상표 보유여부(2점) - 참가전시회 정보(Review) 작성여부(각 1점)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결산서상 수익발생 시)(2점) 						
합 계							100		

* 신규단체 성과평가 점수는 중간점수(19점) 적용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평가표(수출상담회)

구 분	하위항목	배점	평가구분					계
			A	B	C	D	E	
1. 사업계획	① 사전준비/교육 - 목표시장 진출전략(경쟁요소 분석 등) - 기업모집 교육전략(상담기법 등) - 바이어 발굴, 매칭 계획 - 현지 사전마케팅 계획	1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5
			15	12	9	6	3	
	② 현지파견 - 상담장 운영계획 - 세부 파견일정 - 업체수요 반영 계획	2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미흡	
			20	16	12	8	4	
	③ 후속상담 및 사후관리 - 바이어 초청계획 - 참여기업 성과관리 방안 등	1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2. 전략성 - 현지수행사 역량 - 품목 전략성 - 신시장·신품목 개척 노력	2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5	
		25	22	19	16	13		
3. 수출전문기관 운영능력	①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2023~2025년 지원사업 실적	5	10회 이상	8~9회	6~7회	4~5회	3회 이하	30
			5	4	3	2	1	
	② 수출전문기관 성과평가	25	상위10% 이내	상위20% 이내	상위30% 이내	상위40% 이내	상위40% 초과	
			25	22	19	16	13	
4. 가점	○ 가점 - 공동상표 보유여부(2점) - 참가상담회 정보(Review) 작성여부(각 1점)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결산서상 수익발생시)(2점)							
합 계							100	

참고 2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 기준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해외전시회 세부 지원기준

단계	지원금의 집행항목	비율	한도	비 고
사전 준비 단계	■ 사전B2B 마케팅	-	100만원 /업체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전시회 前 온라인 상담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 해외마케팅.홍보		100만원 /업체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현지활동단계기간 포함)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전자카달로그 등 * 공동카달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CI 표기
현지 활동 단계	■ 전시장 임차	70% 이내	-	·기업당 1부스 內 (보험·등록료, 의무납부 세금 포함) *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4부스(총 36㎡)까지 지원
	■ 전시장 장치		-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 장치고도화 계획을 관리기관에 사전제출, 전시 부스 디자인 검토 및 승인 후 최대 100%까지 지원
	■ 기타 마케팅 활동		-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 강사료 등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 통역비	50%	1인/업체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 물품운송료	100%	해상운송 1CBM 편도	·전시물품에 한함(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 * 산업재(기술유출 우려 시) 왕복 지원, 사전 협의 必) * 1CBM :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 1CBM 편도 기준 예산 내 인정
사후 관리 단계	■ 국내체류비	-	30만원 / 1인, 1일	·참여기업 1개사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최대 인정일수: 상담일 수 + 2일 (숙박 Standard 기준) * 수출전문기관이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 초청 바이어 항공료	-	-	·이코노미 왕복 1명
	■ 상담장·차량 임차	70% 이내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 차량임차: 파견기간+최대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 바이어 신용조사비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 통역비	-	-	·英,中,日 20만원/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 샘플발송비	-	100만원	·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실비 인정

단계	지원금의 집행항목	비율	한도	비 고
			/업체	
구성 운영 단계	■ 공동홍보부스	100%	-	·1부스 이내(2부스 이상은 관리기관 사전 승인 必) ·전시회 정책상 품목별 별도 홍보부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최소 각 10개사 이상일 때 추가 홍보부스(1부스) 지원 ·장치비는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적용
	■ 통역비		1인/단체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 주최 측, 내방객 회의/인터뷰, 바이어 응대 등 구체적인 역할 없을 시 불인정
	■ 물품운송료		해상운송 1CBM 편도	·공동키달로그 등 홍보관 운영 관련 물품에 한함(1CBM 이내)
	■ 수출전문기관 항공료, 국외여비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 <참고3> 국외여비 기준 한도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내 실비 인정 * 도시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임 포함 * 항공료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 제외 必
	■ 간담회비(국내/국외)		5만원/업체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기타 운영비		5만원/업체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사업용 문구비 등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 이행보증보험증권료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 구성운영단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5%(공동 홍보부스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정부 연계 시, 기업 자부담 비율이 지방정부와 동일한 비율로 조정될 수 있음

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상담회 세부 지원기준

단계	지원항목	지원비율	한도	비고
1단계 (사전준비)	■ 사전B2B마케팅	-	100만원/업체	·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상담회 前 온라인 상담 ·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 해외마케팅·홍보	-	100만원/업체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전자 카달로그 등 * 공동카달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기부중앙회 CI 표기
2단계 (현지파견)	■ 상담장 임차료	70% 이내	-	· KOTRA 무역사절단 상담장 임차료 준용하여 실비 인정
	■ 상담장 장치		-	· 상담장 구성(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 기타 마케팅 활동		-	·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 강사료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 통역비	50%	1인/업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3단계 (사후관리)	■ 국내 체류비	-	최대 30만원/1인, 1일	·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 최대 인정일수: 상담일수+2일(숙박비만 인정 Standard) * 수출전문기관이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 초청바이어 항공료	70% 이내	-	· 이코노미 왕복 1명
	■ 상담장 및 장치		-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 차량임차: 파견기간 + 최대 2일(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 바이어 신용조사비		-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 통역비		-	· 영어, 중국어,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 샘플발송비	-	100만원/업체	· 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 내 실비 인정
구성 운영 단계	■ 수출전문기관 담당자 항공료, 국외여비	100%	-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실비 인정 * 도시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임 포함 * 항공료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 제외 必
	■ 간담회비(국내)	-	5만원/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간담회비(현지)		5만원/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기타 운영비		5만원/업체	· 비자발급,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사업용 문구비 등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 이행보증보험	100%	-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 구성운영단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5%(공동 홍보부스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정부 연계 시, 기업 자부담 비율이 지방정부와 동일한 비율로 조정될 수 있음

참고 3**국외 여비 기준****국외여비 기준**

(단위 : 미국 달러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항 공 료
가	30	176	81	일반석 실비
나	30	137	59	
다	30	106	44	
라	30	81	37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예정지에서 제1호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